

11월 수시공시 변경보고서

1. 집합투자업자 : 키움투자자산운용

2. 집합자기구 : 키움코리아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
3. 제한사항

1) 법률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 1항 제 3호 마목

2) 내용 :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
4. 위반사항

- 위반일 : 2019년 11월 5일

- 위반내용 : <키움자자손손백년투자증권자 1호 A-E>에의 29.18% 투자

- 신탁업자 시정요구일자 : 2019년 11월 7일

- 집합투자업자 이행일자: 2019년 11월 12일 기준일 현재 위반내용 미해소

5. 공시일 : 2019년 11월 27일(수)